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916
----------	-----

2019년 9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19년 8월 7일
- 다. 회부일 : 2019년 8월 13일
- 라. 상정일 : 제28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8월 29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엄연숙 평생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서울시는 우수인재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 받기 곤란한 학생 및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에 서울장학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장학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대상기관 : 서울장학재단

2) 사무명 : 서울장학사업 추진

3) 추진근거

○ 법령 : 「민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4) 출연의 필요성

○ 장학사업을 통해 저소득 학생들 및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 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설립된 서울장학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우수 학생 및 학교밖청소년을 발굴·육성하고, 예·체능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 및 공익활동으로 사회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지원함으로써 미래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

5) 사무내용

○ 공평한 교육의 기회 제공·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장학사업

- 저소득가정 지원 장학사업 : 등록금 및 진로개발 학업장려 장학금지원

- 공익인재 대학생 지원, 전공우수 대학생 지원, 글로벌 교환학생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학업장려금 지원, 소상공인가정의 자녀 장학금지원
 - 민간기탁 연계 장학사업
-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사업
- 인재지원 및 교류 활성화 : 멘토링, 진로특강, 인문학 특강 등
 - 홍보사업 : 장학사업 및 장학생 스토리 홍보를 통한 민간자
원연계 지원

6) 기관개요

구분	사무국 현황
주 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2층(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 빌딩)
준공연도	1995년
임대면적	675.37㎡
구 성	이사장실, 사무국장실, 회의실(3), 창고, 사무공간
입주연월	2018.3월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1,441,308천원
- 산출근거 : 장학사업비 10,383,119천원, 인건비 564,453천원,
운영경비 427,276천원, 성과급 66,460천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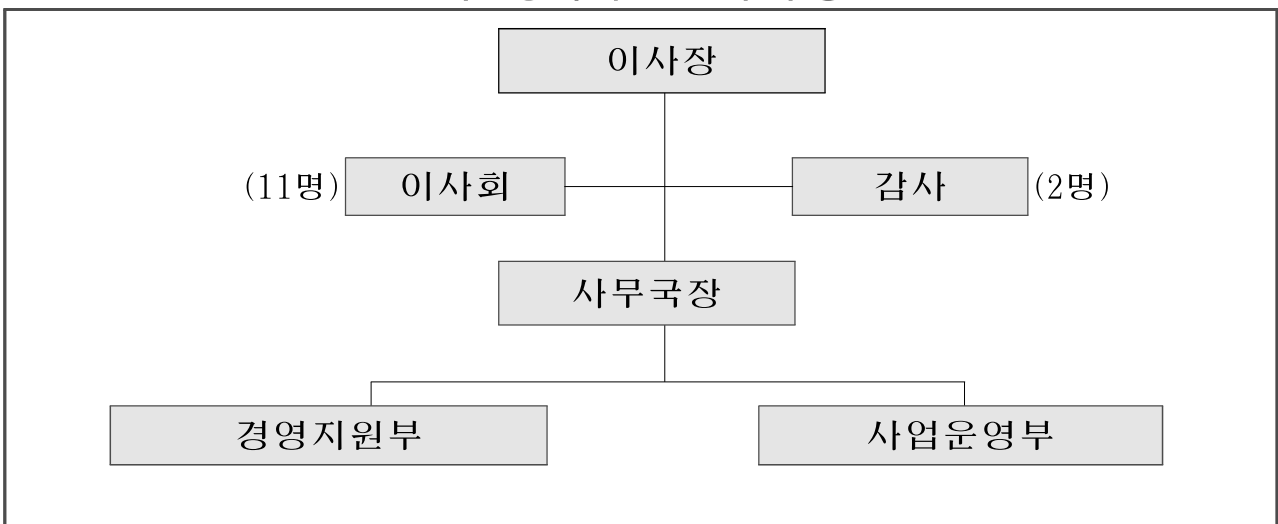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편성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 및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관련 법령¹⁾에 따라 (재)서울 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장학재단은 관련 법령(「민법」 제32조²⁾,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조례(「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법령에서 정한 출연의 조건은 충족한다고 하겠음.

〈 서울장학재단 조직 구성 〉



-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장학재단 인력 현황 〉

구 분	계	상근임원	2급	3~4급	5급	6급
정 원	13	1	1	2	4	5
현 원	10	0	1	2	4	3
과부족	△3	△1	-	-	-	△2

※ 2019년9월, 6급 2명을 채용예정 (9월 공고예정)

- 장학재단은 2008년 조례 제정 후 2010년 독립운영을 시작하여 1국 2부 체계로 총 10명이 110억원의 예산으로 17개 장학사업(시출연금사업 8개, 자체사업, 민간기탁사업 9개)을 추진하고 있음.

〈 서울장학재단의 장학사업 현황 〉

구 분	지원인원	지원금액	예산액(선발경비포함)
서울희망고교장학금	2,645명	평균 1,520천원	4,025,000천원
서울희망고교진로장학금	668명	1,500천원	1,006,000천원
서울희망예체능장학금	100명	3,000천원	310,000천원
서울희망 하나고 장학금	75명	평균 1,200천원	90,000천원
서울희망대학장학금	2,000명	2,000천원	4,008,500천원
서울희망대학진로장학금	200명	2,000천원	411,000천원
서울희망공익장학금	50명	4,000천원	241,000천원
서울평화희망장학금	10명	2,000천원	21,000천원
청계천꿈디딤	40명	1,000천원	43,000천원
오토꿈이름서울	30명	1,000천원	33,000천원
서울 꿈길	100명	1,500천원	150,500천원
청춘 Start	40명	평균2,500천원	107,000천원
유영아 학업	20명	2,000천원	42,700천원
공항리무진서울교환학생	50명	평균3,500천원	195,800천원
서울희망대학 문화예술	20명	4,000천원	84,000천원
서울희망 SOS	200명	1,000천원	200,000천원
소상공인 디딤돌	100명	1,000천원	100,000천원

- 2020년 서울장학재단 출연금(114억4,130만8천원)은 전년(111억1,104만9천원) 대비 2.7%(3억3천만원) 증액한 수준이며, 출연금 중 장학사업비(103억8,311만9천원)는 전년(101억6,614만2천원) 대비 2.1%(2억1천7백만원) 증액되었고, 인건비 등 운영경비(10억5천819만원)는 전년(9억4천491만원) 대비 8.5%(1억1천328만원)가 증액되었음.

〈 서울장학재단 출연금 증감 비율 〉

(단위:천원)

	2019	2020	증감액	증액비율
출연금 총액	11,141,049	11,441,308	300,259	2.7%
사업비	10,166,142	10,383,119	216,977	2.1%
운영경비 등	975,166	1,058,189	83,023	8.5%

출처 : 평생교육국 제출(2019.8.20.) 자료 재구성

〈 서울장학재단 출연금 편성 현황 〉

(단위:천원)

연도	계		사업비 (a)	운영경비			
	금액 (a+b)	전년대비 증감비율		인건비	경비	성과급	소 계(b)
2020년예정	11,441,308	2.7%	10,383,119	564,453	427,276	66,460	1,058,189
2019년	11,141,308	-3.3%	10,166,142	521,954	398,430	54,782	975,166
2018년	11,518,317	18.0%	10,438,359	458,357	579,124	42,477	1,079,958
2017년	9,757,945	-3.9%	9,105,106	354,866	264,140	33,833	652,839
2016년	10,156,028	-	9,551,564	321,641	259,568	23,255	604,464

출처 : 평생교육국 제출(2019.8.20.) 자료 재구성

〈 서울장학재단의 2019.7.30.기준 예산집행 현황 〉

(단위:천원)

예산현액	집행액 (원인행위 기준)	%	집행잔액
11,141,308	4,622,743	41.49%	6,518,565

출처 : 평생교육국 제출(2019.8.20.) 자료 재구성

- 장학재단은 관련 법령³⁾에 따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의 지원 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고,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재능·적성 및 소질의 개발 지원, 학업과 진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학재단의 출연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장학사업 예산편성의 비효율성, 편중된 성과평가 모델, 장기 인력수급 계획 미수립, 부실한 장학시스템, 장학선정위원회의 편중성 및 비효율적 운영 등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희망 하나고 장학금’의 경우, 하나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 가정 및 사회적 배려계층의 학생에게 기숙사비 및 식비를 지원하는 장학제도로 3년 평균 36.8%의 불용률이 발생하고 있는바, 효율적인 장학사업을 위해 적정예산의 편성에 따른 감액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서울희망하나고 장학금 불용현황 〉

(단위:천원)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소계	393,000	248,389	144,669	36.8%
2016	144,000	108,000	36,000	25.0%
2017	144,000	70,177	73,882	51.3%
2018	105,000	70,212	34,787	33.1%

출처 : 2016, 2017, 2018년 서울장학재단의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재무제표와 예산회계결산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서

3)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장학재단의 사업은 경제여건을 기준으로 하여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에서 벗어나, 진로, 역량 등 다양한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고, 이러한 장학선발 기준의 다양화는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진로멘토링, 역량관리, 선·후배 장학생 커뮤니티 등 다양한 사업으로 장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바,

기존의 성과목표를 정량적(수혜자수, 총지원액) 목표로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분야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평가 모델로 장학재단의 성과를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단순히 ‘서울시에서 받은 예산을 기준에 맞는 자에게 전달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수혜자를 위한 교육기회 제공 및 역량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2019.7.30.기준 서울장학재단의 사업추진 현황 〉

(단위:천원)

사업명	목표		실적		달성율(%)	
	인원	장학금액	인원	장학금액	인원	금액
고교분야(등록금)	2,645	4,021,600	2,092	1,507,169	79.1%	37.5%
고교분야(진로)	668	1,002,000	668	501,000	100.0%	50.0%
서울희망예체능	100	300,000	-	-	-	-
하나고	75	90,000	64	38,965	85.3%	43.3%
대학분야(등록금)	2,000	4,000,000	2,387	2,023,000	119.4%	50.6%
대학분야(진로)	200	400,000	-	-	-	-
공익인재	50	200,000	50	100,000	100.0%	50.0%
서울평화	10	20,000	-	-	-	-
합계	5,748	10,033,600	5,261	4,170,134	91.5%	41.6%

출처 : 평생교육국 제출(2019.8.20.) 자료 재구성

※ 서울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외 활동 : 장학생 커뮤니티 지원사업 중 진로멘토링, 독서토론회, 힐링콘서트, 서울희망 예체능 장학금 중 장학생과 멘토링과 역량관리, 청계천꿈디딤장학금의 기부기관 방문 및 체험, 청춘 Start 장학금의 기부기관과 멘토링, 선후배 장학생관 교류 프로그램 등

- 서울장학재단 정원은 13명이나, 현재 10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9월에 2명(6급)을 추가적으로 채용할 예정에 있으며, 상임이사(1명)를 제외한 직원의 경우에는 정원에 따른 현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여지나, 장학재단이 진로, 나눔, 글로벌 등 필요한 역량을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할 예정인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여부 및 이에 맞춘 업무변경이나 인력 수급계획 등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2017년 서울장학재단은 연구⁴⁾를 통해 발전방안을 수립하였으나, 구체적인 운영구조 및 사업체계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이 보고되지 않고 있는바, 향후 구체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세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발전계획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평생교육국의 철저한 검증 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증 결과 및 추진 사항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여 실질적인 개선상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장학재단 장학사업 발전방안 연구’ 주요 내용 〉

사업 개선 필요성

○ 장학사업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대내외적인 공감대 확산

- 서울 학령인구 감소
- 정부의 공교육비 지원강화 → 등록금 지원 선발대상 중복
- 경제력에 따라 ‘역량개발 기회’ 격차증가 → 진로역량 중심지원 전환요구

향후 개선방향

○ 저소득층 학생에게 안정적 학업수행 및 개인역량 개발 집중지원

- 고교 무상교육·국가장학금 확대시기에 따라 재단의 지원을 역량개발로 전환
- 필요역량(진로·나눔·글로벌)을 중심으로 서울특화 학업장려금 지원 추진

○ 재단사업 운영구조 통합: 단일 장학사업 모델 및 통합 장학사업성과 관리 추진

○ 멘토링 기반의 선순환 문화 확산 : 장학금 수혜자에서 적극적인 활동주체로 전환

4) 서울장학재단 장학사업 발전방안 연구, 2017.7.12

- 장학재단은 지속적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⁵⁾해 왔으나, 학령 인구수 감소, 장학금 지급기관 증가로 장학재단의 장학금 중 불용액 발생되고 있으며, 지급된 장학금의 반환 및 중복수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2016~2018년 9월까지 장학금 반환 현황〉

(단위:천원)

	전수	금액	비고
	1,140	789,642	반환자 1,140명 중 75.1%(856건) 중복수혜(교육청, 교육급여, 타 장학금 등), 24.3%(277건) 휴학, 자퇴, 퇴학, 졸업 등 기타 0.6%는 소득초과, 과오입금 등임.
2016	346	261,252	
2017	370	239,642	
2018	424	288,748	

출처 : 2018 행정사무감사 평생교육국 제출자료 재구성

- 장학금 반환은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장학금 반환자의 75.1%에 달하는 대부분의 중복 수령자는 교육급여, 교육청 등 타 장학금과 중복 수령에 따른 반환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장학재단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장학기관·자치단체의 연계로 장학금 반환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과는 상반된 것이며,
장학재단은 매년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수혜 여부를 확인할 시스템 및 연계체계의 부실·미흡 사항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장학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하겠음.

5) 제270회 정례회, 의안번호 1312번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시 소재 학교의 재학생 →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또는 시민의 자녀이면서 학생 또는 입학예정자
- 차상위계층의 자녀인자 →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학생
- 서울시 소재 대학의 석·박사 과정 중 대학원장이 추천한자 → 공익을 위한 사회기여활동이 우수한자

- 장학금 신청자 중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인재양성의 전문가로, 장학재단이사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도록 장학재단의 내규로 정하고 있음.

※ 장학선정위원회 구성방법

「장학선정위원회 내규」제3조(구성 및 임기) ②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1. 교육, 복지, 문화, 공익 등 장학 및 인재양성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서울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심사위원으로 활동경험이 있는 자
 3. 기타 재단 이사장이 장학생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내외부(교육청,재단) 추천인 중에서 활동 경력 등을 고려하여 위촉함
-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선정위원회는 8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총 21회 운영했으나, 심사위원의 참여율은 56.0%에 그치고 있고, 선정위원회 참석자 중 3명은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고, 심사위원으로 활동(방** 5회, 조** 2회, 김** 1회)하였는바, 선정위원회의 운영이 합리적 또는 효율적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장학위원회 위원의 직업도 교육분야에 편중(교수 5명, 고등학교 교장 1명, 공익기관 대표 1명, 법조인 1명)되어 있음.

〈 서울장학재단의 장학선정위원회 위원의 참석현황 〉

연번	구분	성명	소속	참여횟수	참석률
					56.0%
1	위원장	000	AA대학교 교수	21	100.0%
2	위원	000	BB대학교 교수	12	57.1%
3	위원	000	CC대학교 교수	6	28.6%
4	위원	000	DD대학교 교수	11	52.4%
5	위원	000	변호사	7	33.3%
6	위원	000	EE청소년00재단 이사장	13	61.9%
7	위원	000000	FF대학교 교수	8	38.1%
8	위원	000	GG고등학교장	16	76.2%
미위촉자		방**	미상	5	23.8%
		조**	미상	2	9.5%
		김**	미상	1	4.8%

출처 : 2018 행정사무감사 평생교육국 제출자료 재구성

- 심사위원의 낮은 참여율, 미위촉 위원의 장학생 선정 관여, 선정위원의 특정분야 치중은 장학생 선발에 대해 공정성이 있었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는바, 공정한 장학생 선발을 위한 합리적인 선정위원회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장학금의 지급분야가 적성·재능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는바, 다양한 분야의 위원 위촉으로 장학선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복지의 개념이 확대되고,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장학사업의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적어지는 등 장학사업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여지는바, 신규 대상 발굴 및 범위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와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특히, 장학재단 장학금의 40%이상을 차지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은 고등학교 의무교육의 시행⁶⁾에 따라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반영한 장학재단의 출연금 축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나, 평생교육국은 전례답습적 예산편성으로 전년보다 증액된 출연금을 책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꼼꼼한 예산 추계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 검토된 안건만을 제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이를 고려한 출연 동의심사와 함께 장학사업이 적정예산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 시 예산규모의 조정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6) 교육부·기획재정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 2019.4.9.

- 2019년 2학기 고3, 2020년 고 2·3학년, 2021년에는 의무교육이 고등학교까지 전면 시행될 예정에 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916
----------	-----

제출년월일 : 2019년 8월 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우수인재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 받기 곤란한 학생 및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나. 이에 서울장학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장학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대상기관 : 서울장학재단
- 나. 사무명 : 서울장학사업 추진
- 다. 추진근거
- 법령 : 「민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라. 출연의 필요성

- 장학사업을 통해 저소득 학생들 및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 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설립된 서울장학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우수 학생 및 학교밖청소년을 발굴·육성하고, 예·체능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 및 공익활동으로 사회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지원함으로써 미래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

마. 사무내용

- 공평한 교육의 기회 제공·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장학사업
 - 저소득가정 지원 장학사업 : 등록금 및 진로개발 학업장려 장학금지원
 - 공익인재 대학생 지원, 전공우수 대학생 지원, 글로벌 교환학생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학업장려금 지원, 소상공인가정의 자녀 장학금지원
 - 민간기탁 연계 장학사업
-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사업
 - 인재지원 및 교류 활성화 : 멘토링, 진로특강, 인문학 특강 등
 - 홍보사업 : 장학사업 및 장학생 스토리 홍보를 통한 민간자원연계 지원

바. 기관개요

구분	사무국 현황
주 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2층(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 빌딩)
준공연도	1995년
임대면적	204.3py(675.37㎡)
구 성	이사장실, 사무국장실, 회의실(3), 창고, 사무공간
입주연월	2018.3월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1,441,308천원
- 산출근거 : 장학사업비 10,383,119천원, 인건비 564,453천원, 운영경비 427,276천원, 성과급 66,460천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교육정책과 교육격차해소팀 박종범(☎2133-3945)